

의안번호	2217040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4.
추계번호	26A1064
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제3항(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)	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, 온라인 판로 확보,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 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0조제3항(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, 온라인 판로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‘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’ 사업 중 ‘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’ 내역사업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 실증 지원을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, 2026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
 - － 본 사업은 산업융합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성능개선과 시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연간 1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산업융합 신제품 해외 판로 개척 관련 지원사업

세부사업-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주요내용	사업시행주체 (사업지원형태)	예산(백만원)	
			2025	2026
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-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(일반회계, 3731-328)	산업융합 신제품 등 중소·중견기업 제품의 적시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 맞춤형 성능개선 및 수출 대상국 현지화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	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출연)	100	100

자료: 산업통상부

- 또한, 법 제18조제2항¹⁾이 2026년 6월 3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,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

□ 개정안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판로 개척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이와 관련된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확대·신설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
- 참고로, 산업통상부는 ‘수출경쟁력강화지원’ 사업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에서 온·오프라인 한국관을 조성하여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고, ‘해외진출기반구축’ 사업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및 현지진출 지원, 현지 경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

1) 제18조(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)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,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
2.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
3. 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[표 2] 산업통상부의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재정사업

세부사업-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주요내용	사업시행주체 (사업지원형태)	예산(백만원)	
			2025	2026
수출경쟁력강화지원 (일반회계, 1139-305)	(해외전시회(단체, 개별)) 해외 유망전시회에 온·오프라인 한국관을 조성, 해외전시회 온·오프라인 단독참가 시 직접경비 및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(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) 경제외교를 활용한 수출 및 투자유치 성과 창출 지원 (해외진출기업지원) 중소·중견기업의 주요 국가별 코트라 현지 무역관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보조)	47,501	41,404
해외진출기반구축(일반회계, 1139-309)	(중소중견기업 해외M&A 지원) 중소·중견기업의 공급망 재편 대응,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M&A 활용한 해외투자 진출 지원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보조)	829	746

자료: 산업통상부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